

2024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중소화랑의 신진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를 시행하오니 민간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4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공고기간 : **2024년 1월 19일(금) ~ 2024년 2월 2일(금), 17:00 까지**
- 지원기간 : 2024년 ~ 2026년 다년(3년) 지원 *사업 기간 : 지원 기간 중 3월 ~ 10월(총 8개월)
- 지원대상 : 전시공간 운영 및 전속작가 육성이 가능한 민간단체(화랑)
- 지원규모 : 50단체 내외(작가 수 기준 70명)
- 지원내용 : 전속작가 시장 진입 지원비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단체 (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3년 동안 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유지할 단체(화랑) ① [업태: 소매업/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②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단체 ③ 최근 2년간(2022~2023년) 연 1회 이상 전시(내·외부, 페어전시 등)를 개최한 단체 						
	전속 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대한민국 국적 작가 -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레지던시(국·내외)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 49세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 대상 전속작가 시장진입지원비 및 홍보마케팅비 1작가 당 1,500만원(국고)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장진입 지원비</td> <td>· (전속작가 작품 제작유통 소요 경비) 재료 구입제작비, 작업실 임차료, 운송비 등</td> </tr> <tr> <td>홍보 마케팅비</td> <td>· (전문가 활용) 평론 · 비평 · 번역 · 감수 사례비 ·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및 SNS, 도록·리플릿·포스터 제작 · (전시·행사 소요 경비) 전속작가 전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아트페어 신청·참가비, 작품 운송·설치·철거, 전시물품(기자재 등) 임차 등</td> </tr> </tbody> </table>	항목	지원내용	시장진입 지원비	· (전속작가 작품 제작유통 소요 경비) 재료 구입제작비, 작업실 임차료, 운송비 등	홍보 마케팅비	· (전문가 활용) 평론 · 비평 · 번역 · 감수 사례비 ·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및 SNS, 도록·리플릿·포스터 제작 · (전시·행사 소요 경비) 전속작가 전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아트페어 신청·참가비, 작품 운송·설치·철거, 전시물품(기자재 등) 임차 등
	항목	지원내용						
	시장진입 지원비	· (전속작가 작품 제작유통 소요 경비) 재료 구입제작비, 작업실 임차료, 운송비 등						
홍보 마케팅비	· (전문가 활용) 평론 · 비평 · 번역 · 감수 사례비 ·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및 SNS, 도록·리플릿·포스터 제작 · (전시·행사 소요 경비) 전속작가 전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아트페어 신청·참가비, 작품 운송·설치·철거, 전시물품(기자재 등) 임차 등							
이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대비 자부담 30% 편성(1작가 당 450만원), 사업 수행 시 작가 당 비평 1개 이상 진행 필수 • (작가) 지원기간 중 연간 10개 이상 신작 제작 및 프로젝트 보고서 화랑에 제출 • (화랑·작가) 전속계약 체결 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원기간 중 작가별 최소 연 1회 이상 전시개최(개인·단체·페어참가 등) 필수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개 내외 단체(작가 수 기준 약 70명) - 선정단체 사업수행 불가를 대비하여, 예비단체(작가 수 기준 5명) 선정 예정 • 1개의 단체 대상 작가 지원 규모는 최대 3명까지 가능('23년 본 사업 선정단체포함)
	다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본 사업 선정 단체 대상 및 '24년 전속작가 추가 지원 시(~24.2.2(금)17시 까지)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전속계약서 메일 제출(artre@gokams.or.kr) • 1차 연도 지원 기간(3월~10월)이 종료된 이후, 2,3차 연도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을 신청해야 함 (※ 별도 안내 예정) • 1차 연도 지원 기간(3월~10월)이 종료된 이후, 화랑·작가 간 전속계약 중단을 원할 경우 '지원 중단 공문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연도 지원이 종료됨 • 단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연도 추가 모집 예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2024 전속작가제 선정단체는 3년 연속 지원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는 다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당시 전속작가와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연속 지원 혜택 불가 (2024-2026 연속 지원 혜택은 24년 선정 전속작가와만 계약을 유지하였을 때 한함) - 연도별 지원 기간(3월~10월) 종료 이후, 필수 이행사항을 하지 않은 단체 </div>

■ 공모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 방법	홈페이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경로	• 상단 검색엔진 > 2024 전속작가제 입력 > 검색 > 공모사업 클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공인인증서 필요, 가입 시 단체회원 가입 • 지원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본사업은 "예치형" 사업 • 신청 기간 중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장애신고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이용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월 19일(금) ~ 2024년 2월 2일(금) 17: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미제출 처리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 발생이 잦으므로 마감일 전 제출 권장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② 지원신청서(붙임자료 포함)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 기입란에 직인/날인 필수, 한글(HWP)파일 제출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 전 업태, 종목 확인) ④ 전속계약서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사용 필수 -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및 도장 날인(간인 필수)된 전속계약서 사본 제출 	e나라도움 첨부 제출

■ 심사 및 결과발표

구분		내용	
심사	방법	• 내·외부 전문 심의위원 5인 내외 구성, 서류심사 진행	
	기준	세부내용	항목(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 작가 육성계획에 따른 전속계약 기간, 지원방식 적절성 	[단체] 사업수행역량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 기존 미술시장에 없는 참신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가는 작가 • 작가의 예술성 및 한국 미술 기여도, 장르·지역·활동 실적 등 	[작가] 예술성 성장가능성 (60)		
일정	심사일정	• 2024년 2월 2주 ~ 3주 (예정)	
	결과발표	• 2024년 2월 4주 (예정)	
	공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공모 신청·접수	심의·선정	교부·사업수행	정산·사업신청
1월 3주~5주	2월 2주~4주	3월 중	11월~'2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지원 신청 • 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첨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심의 • 총 70명 기준 작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참석 •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실적 보고

■ 문의 및 유의사항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본부 시각유통팀 (02-708-2298, 02-2098-2919 / artre@gokams.or.kr) - 유선 문의 가능 시간 : 평일(월~금) 10:00~17: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마감 당일은 문의 증가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마감 하루 전까지 문의 필요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또는 과거 수행했던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대표와 전속계약 체결 작가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전속작가 대상 전시 기획, 평론 및 번역/감수 사례비 지급 불가

	<p>※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임직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거래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가 주관하는 미술주간 참여 및 조사 응답 필수(미술시장 실태조사, 회랑작가 별 전속계약 유지를, 만족도 조사 등) • 선정 이후 센터에서 주최하는 사업 오리엔테이션 실무자 참석 필수 • [2025년 ~ 연속지원 선정 중단] 보조사업자의 미정산(정해진 마감일 까지 정산이 완료 되지 않은 자 및 제출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자), 미반납(부정수급 및 미정산 등으로 센터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반납하지 않은 자), 부정수급(부정수급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센터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그 외 타나라도움 및 센터 안내 절차 미진행 등)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학교(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지자체(광역시·도·군 등 기초 자치 단체) 소속의 단체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차별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로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미술관 분류 기준 적용

연번	소재지		구분	기관명
	시·도	시·군·구		
1	서울	종로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2	서울	중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
3	서울	중구	공립	DDP디자인뮤지엄
4	서울	강서구	공립	겸재정선미술관
5	서울	중구	공립	서울시립미술관
6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구립미술관
7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분관)
8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성북구립미술관분관)
9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예술창작터 (성북구립미술관분관)
10	서울	종로구	공립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11	경기	과천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12	경기	안산시	공립	경기도미술관
13	경기	이천시	공립	경기도자미술관
14	경기	여주시	공립	경기생활도자미술관
15	경기	고양시	공립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16	경기	안산시	공립	김홍도미술관
17	경기	용인시	공립	백남준아트센터
18	경기	성남시	공립	성남큐브미술관
19	경기	수원시	공립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1	경기	양평군	공립	양평군립미술관
22	경기	여주시	공립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러
23	경기	오산시	공립	오산시립미술관
24	경기	이천시	공립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5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26	인천	미추홀구	공립	송암미술관
27	인천	중구	공립	인천아트플랫폼
28	강원	강릉시	공립	강릉시립미술관
29	강원	인제군	공립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30	강원	양구군	공립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31	강원	고성군	공립	진부령미술관
32	강원	춘천시	공립	춘천미술관
33	충북	청주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34	충북	충주시	공립	관아갤러리
35	충북	진천군	공립	진천군립 생겨판화미술관
36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37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분관(대청호미술관)
38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한국공예관
39	충남	홍성군	공립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40	충남	천안시	공립	천안시립미술관

41	대전	서구	공립	대전시립미술관
42	대전	서구	공립	이응노미술관
43	전북	남원시	공립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44	전북	김제시	공립	벽천미술관
45	전북	순창군	공립	순창공립옥천골미술관
46	전북	익산시	공립	익산예술의전당미술관
47	전북	완주군	공립	전라북도립미술관
48	전북	정읍시	공립	정읍시립미술관
49	전북	무주군	공립	최북미술관
50	전남	신안군	공립	1004섬수석미술관
51	전남	진도군	공립	남도전통미술관
52	전남	목포시	공립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3	전남	무안군	공립	무안군오승우미술관
54	전남	보성군	공립	보성군립백민미술관
55	전남	곡성군	공립	아산조방원미술관
56	전남	영암군	공립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57	전남	신안군	공립	저녁노을미술관
58	전남	광양시	공립	전남도립미술관
59	전남	함평군	공립	함평군립미술관
60	전남	화순군	공립	화순군립석봉미술관
61	광주	북구	공립	광주시립미술관
62	광주	북구	공립	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
63	광주	남구	공립	양림미술관
64	광주	남구	공립	이강하미술관
65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솔거미술관
66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67	경북	청송군	공립	군립청송야송미술관
68	경북	김천시	공립	김천시립미술관
69	경북	포항시	공립	포항시립미술관
70	대구	달서구	공립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71	대구	수성구	공립	대구미술관
72	경남	창원시	공립	경남도립미술관
73	경남	김해시	공립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74	경남	진주시	공립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75	경남	창원시	공립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76	경남	김해시	공립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77	울산	중구	공립	울산시립미술관
78	부산	해운대구	공립	부산광역시립미술관
79	부산	사하구	공립	부산현대미술관
80	제주	서귀포시	공립	서귀포시기당미술관
81	제주	서귀포시	공립	소암기념관
82	제주	서귀포시	공립	이중섭미술관
83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84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85	제주	서귀포시	공립	제주추사관
86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현대미술관